제463회 규제개혁위원회 회의록

2020. 10. 23.

국 무 조 정 실
규 제 조 정 실

Ⅰ. 회의개요

○ 일　　시 : '20. 10. 23. (금) 14:00 ~ 18:30

○ 장　　소 : 정부서울청사 9층 대회의실(916호)

○ 출석위원(16명)

- 규제개혁위원회 위원장(주재)

- 민간위원 : 김윤정・국경복・문소영・박순애・안소은・윤여송・이세영・이정희・이지혜・이철수・이현주 위원

  * 불참(5) : 박소라, 원구환, 이덕승, 이원우, 정은미 위원

- 정부위원 : 행안부, 공정위, 법제처, 국조실

  * 불참(3) : 기재부, 산업부, 중기부(회피)

Ⅱ. 상정안건

의안번호	상정기관	의 안 명	구 분
2020-476	중기부	상생협력법 개정안	의결 안건
2020-555 ~582	국조실	기재부 등 '20년 재검토 일몰규제 심사안	의결 안건

Ⅲ. 심의 결과

1. (심의) 상생협력법 개정안 (중기부, 2020-476)

□ 개 요

소관 부처	중소벤처기업부
근거 법령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규제 사무명	비밀유지계약 체결 의무화 등
위원회 결정 내용	계속심사

□ 논의 내용

1) 부처 의견청취

○ (중기부) 지난 회의에서 비밀유지계약과 서면발급의 차이를 명확히 하려고 노력했으나 계속심사를 하게 되어 죄송스럽게 생각함.

○ (○○○위원) 현행법상으로도 서면발급 의무 조항은 위·수탁거래 계약을 체결한 것을 전제로 규정된 것인지?

○ (중기부) 네. 그러함.

○ (○○○위원) 위·수탁거래 전에 비밀유지계약 체결 의무는 없는 것으로 보면 되는지?

○ (중기부) 비밀유지계약은 위·수탁거래 계약 체결 후뿐만 아니라, 거래 전에도 필요함.

○ (○○○위원) 개정안에서는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면서 서면을 제공하라고 되어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 추가의견을 수렴한 결과는?

○ (중기부) 의견을 수렴해보았을 때 나뉘는 부분이 있었음. 서면발

급 의무와 비밀유지계약 체결 의무 모두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는 한편, 효과 측면에서 비밀유지계약으로 충분히 다룰 수 있어 서면발급과 계약이 중복된다는 의견도 있었음.

○ (○○○위원) 지난 논의에서는 위·수탁거래 전에도 비밀유지계약이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현재 개정안 상으로도 해석상 위 수탁거래 전에도 체결 가능하다는 것인지?

○ (중기부) 개정안을 보면 수탁기업, 위탁기업으로 표현해서 거래 이후 적용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데, 하도급법 사례를 보니, 거래를 전제로 한 전 단계까지 포함할 수 있어 위·수탁거래 관계 전에도 체결 가능하다고 봄.

○ (○○○위원) 처음 기술자료를 제공하며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한 후 지속해서 기술자료 제공요구가 이루어지면 추가 기술자료에 대한 계약은 어떻게 이뤄지는지?

○ (중기부) 추가적인 기술자료 제공에 대해서도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해야 함. 기술자료는 비밀로 관리된 것으로 경제적 유용성이 있는 자료이고, 만일 이를 제공한다면 NDA를 체결해야 함. 추가로 다른 기술자료를 요구해서 제공했다면 기존 비밀유지계약을 갱신(업데이트)하든지 새로운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해야 함.

○ (○○○위원) 기술자료를 제공할 때마다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해야 한다면 번거로울 수도 있지 않은지?

○ (중기부) 현장에서는 계약을 갱신(업데이트)하는 형식으로 이뤄져 번거로운 절차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음.

○ (○○○위원) 비밀유지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생각보다 까다로울 수 있지 않은지? 서면발급의 경우 수탁기업에 기술자료를 요청했다는 법적 근거를 남기는 것으로 상대적으로 간편해 보임. 때에 따

라서는 중소기업에서는 대기업에 서면발급을 받는 것이 더 간편하고, 법적 분쟁 발생 시 제출이 가능하지 않은지? 비밀유지계약은 현장에서 적용을 고려했을 때 어려운 부분이 있어 보임.

○ (중기부) 분쟁 발생 시 비밀유지계약이 더 강한 보호가 가능함. 비밀유지계약의 경우 해외에서는 기본적으로 거래 전부터 체결하고 있음. 우리나라의 경우 문화로 정착이 되어있지 않아 어려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나 이러한 부분은 정책적으로 교육, 홍보, 법적 지원 등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고 있음.

○ (○○○위원) 표준계약서를 잘 만들 필요가 있다고 봄.

○ (중기부) 네. 그러함.

○ (○○○위원) 새로운 기술이라는 것이 작은 변동으로도 새로운 기술로 볼 수 있을 수도 있고, 그런 것은 보호가 안 될 가능성도 있을 것 같은데, 이에 대한 대안이 있으신지?

○ (중기부) 기술자료를 어떻게 계약서에 담는지가 제일 중요할 것 같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시에서 구체적 사례, 유형을 명확히 하여 계약 체결 시 혼동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임.

○ (○○○위원)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국제적 기준이라고 했는데 서면발급의 경우는?

○ (중기부) 해외 문화의 경우 이메일로 요청하는 편으로 문화적으로 다른 부분이 있음.

○ (○○○위원)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양 당사자가 벌칙을 받는 것인지?

○ (중기부)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양 당사자 모두 과태료를 부과함

○ (○○○위원) 비밀유지계약과 서면발급 의무 간 관계를 어떻게

보시는지? 하도급법상 기술자료 관련 서면은 기술자료를 요구할 때 위·수탁기업 간 협의를 통해 작성하는 것으로 사실상 계약에 준하는 측면이 있음. 그렇다면 비밀유지계약과 계약의 성격이 있는 서면이 어떤 차이가 있고 어떤 점에서 보완적인 관계로 볼 수 있는지?

○ (중기부) 비밀유지계약과 서면발급은 미이행 시 손해배상과 관련된 사항 포함 여부 부분에서 차이가 있음. 이러한 부분에 있어 비밀유지계약은 서면발급과 비교해 강화된 보호 수단으로 봄.

○ (○○○위원) 서면도 계약에 준하는 성격이 있는데 서면도 손해배상의 근거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닌지?

○ (중기부) 서면발급의 경우 손해배상에 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음. 서면발급은 구두로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것을 방지하고, 소송 시 기술자료 제공요구를 받았음을 제시할 수 있는 수단에 불과함. 비밀유지계약은 손해배상 책임과 위약벌 사항에 관한 내용이 들어가 있는 차이가 있음.

○ (○○○위원) 기술자료의 요건 중 비밀관리성이 있어, 서면발급만으로는 비밀관리성을 충족하기 어렵고,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를 충족하는 것으로 이해를 했는데 맞는지? 기존 서면발급과 관련된 기술자료가 소송에서 비밀관리성 입증이 어려워 보호받기 어렵다고 해서 NDA를 체결하는 것인지?

○ (중기부) 서면발급의 경우 기술자료를 요구받아 제공함을 증명하는 것이고, 비밀유지계약의 경우 제공한 기술자료의 비밀관리성을 인정받기 위한 요건이 될 수 있음.

2) 위원회 논의

○ (○○○위원) 비밀유지계약 체결 의무, 신고에 대한 불이익 조치 금지와 서면발급 시 서면 기재사항 추가, 비밀유지계약 체결 여부 자료조사 세 가지 조항이 있는데, 제일 쟁점이 되는 것은 비밀유지계약과 서면발급 의무 병행 필요 여부인 것 같음.

○ (○○○위원) 비밀유지계약을 맺으면서 추가로 기술자료를 제공하게 될 때도 보호를 할 필요가 있는데, 계약 업데이트로 이뤄질 수 있어 서면발급이 추가로 갖는 의미는 적을 것으로 보임.

○ (○○○위원) 하도급법상 기술자료 서면을 보면 기술자료 요구 목적, 사항, 대가, 사용 방법, 반환 기일, 폐기일 등을 규정하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각각 사인하게 되어 있는데 그런 점에서 서면발급과 비밀유지계약이 중복되는 측면이 있어 보임.

○ (○○○위원) 서면 발급 시 서면 기재사항과 비밀유지계약에 들어가는 사항 비교 시 비밀유지계약에 포함되는 내용이 광범위하고, 서면발급 시 기재사항이 포함되는 것으로 보임.

□ 심의 결과 : 원안동의 및 개선권고

○ 원안동의

- 비밀유지계약 체결 의무화의 경우 원안동의

- 비밀유지계약 체결 의무 이행 여부에 대한 자료조사 원안동의

○ 개선권고

- 서면발급 조항의 경우 비밀유지계약 체결을 의무화하면 서면발급 의무는 이중규제 소지가 있어 삭제하고 이와 관련된 과태료 규정도 삭제 권고

- 기술자료의 부당한 사용 공개 행위 금지 및 해당 행위 고지에 따른 불이익 행위 금지는 유지

2. (심의) '20년 재검토 일몰규제 심사안(국무조정실, 2020-555~582호)

(1) 총괄

○ '20년 재검토기한 도래 일몰규제 총 720건에 대해, 개선 필요성 등 재검토 실시 126건(폐지 4, 개선 122) 정비

심사 건수	규제 폐지	규제개선			규제존속			비규제
			일몰 유지	일몰 해제		일몰 유지	일몰 해제	
720	4	122	92	30	556	363	193	38

(2) 쟁점규제

□ 개 요

소관 부처	문화체육관광부
근거 법령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제22조
규제 사무명	도서정가제 일몰규제 개선안
위원회 결정 내용	원안의결, 부대권고

□ 논의 내용

1) 이해관계자 의견 청취

○ (A단체) 저희는 도서정가제 문제를 놓고서 37개 단체가 모여서 도서정가제 사수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한 바 있음. 그 분들의 의견은 도서정가제가 온전히 유지되고, 때로는 더 강화되는 방안으로 나아가는 게 맞다는 의견. 저희 입장에서도 도서정가제는 강화 방안으로 나아가는 게 맞다는 의견을 계속 개진하고 있음.

○ (○○○ 위원) 도서정가제 이후 도서 출판환경이 어떻게 좋아졌는지?

○ (A단체) 2014년 이전과 이후를 봤을 때, 작은 출판사들이 많이 생겨날 수 있는 토대가 도서정가제 이후에 많이 이루어졌고, 이는 저자들이 다양한 종류의 책들을 발간할 수 있는 토대가 됨. 그 다음에 동네 서점들이 그동안은 계속 줄었는데, 이들이 다시 살아나면서 늘어났고 개성 있는 독립서점이 100여 개에서 600여 개로 늘어남. 이는 도서정가제라고 하는 시스템이 받쳐준 힘이라고 생각. 그런데 이러한 도서정가제가 흔들리게 되면 다시 한번 침체기를 겪을 수 있다는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게 현실임.

○ (○○○ 위원) 현행 재정가 기간인 18개월을 축소하는 안에 대해서는 수용하시는 건지?

○ (A단체) 문체부가 여러 차례 회의를 통해서 합의안을 만들었는데, 소비자 후생이라는 이름으로 저희가 양보한 걸로 알고 있음. 저희 입장에서는 흔쾌한 건 아닌데 지금 상황에서 필요하다면 어쩔 수 없다라는 마음임.

○ (○○○ 위원) 전체적으로 출판·유통이 점점 온라인으로 가고 있는 상태에서, 소비자 입장에서 온라인을 이용할 때 가격이 싼 것도 있지만 편리해서 이용을 하는 소비자들도 많은데, 같은 가격에서 판매하게 되면 오프라인과 온라인의 경쟁력 차이가 더 벌어지는 문제가 없는지?

○ (A단체) 그 부분 때문에 오프라인 서점과 온라인 서점에 공급률 차등에 대한 논의가 나오고 있음. 그런데 이번 도서정가제가 흔들린다는 얘기 때문에 공급률 얘기를 못하고 할인율 문제가 다시 얘기된 것임. 프랑스 같은 경우는 오프라인에서만 5% 할인할 수 있고

온라인은 전혀 할인을 못하게 함. 저희도 그러한 프랑스 방식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함

○ (○○○ 위원) 처음에 책이 나올 때 정가는 대략 어떤 방식으로 정해지는지?

○ (A단체) 시장논리에 의해 유사도서 정가를 기준으로 거기서 벗어나기 어려움. 시장가격에 영향을 받아 적정가격을 매기게 되는 내부 시스템이 있음

○ (○○○ 위원) 동네서점하고 대형서점간 출판사로부터 납품가격의 차이가 어느 정도 되는지?

○ (A단체) 동네서점이 소매이기 때문에 10% 정도 비싸게 공급받는다고 보면 됨.

○ (○○○ 위원) 종이책의 종사자 수나 매출액이 점점 줄어들고 있고 전자책 출판은 계속 늘어나고 있음. 특히 전자출판에서 구독 서비스로 많이 바뀌고 있는 실정에서, 구독 서비스가 계속 확대되는 중에도 도서정가제가 출판업에 유리한 역할을 할 수 있는지?

○ (A단체) 종이책이든 전자책이든 형태만 다른 것이고 창작에 대한 컨텐츠는 똑같다고 봄. 이 창작자들이 안전하게 소비자와 거래할 수 있게 되는 망이 건강해져야 함. 가격이 유통을 통해서 정해지는 방식이 될 경우에 창작자들은 그 속에서 보호받지 못함. 요즘에 계속 문제가 되는 게 무료 보기인데 거기에는 창작료가 안 나감. 그런데 그것을 저자가 컨트롤할 수 없음. 왜냐하면 저자가 무료 보기를 거부할 경우에 유통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유통의 횡포가 커지면 커질수록 작가들은 제대로 창작을 할 수 없게 됨. 그래서 저는 도

서정가제가 저작권을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라고 생각함.

○ (○○○ 위원) 국내 책값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 (A단체) 도서정가제 이후에 가격 인상률이 훨씬 떨어졌다고 알고 있음. 실제로 국민들이 책을 사지 않거나 책을 읽지 않는 이유는 책값이 아니라 매체가 다르고 시간이 없고 이런 이유들이 대부분이며, 책값은 제가 알기로는 5% 이하로 알고 있음. 외국과 비교를 한다면 3분의2 수준임.

○ (○○○ 위원) 종이책과 전자책의 특성이 다르고 특히 유통과 관련해서 전자책의 비용이 적고, 차별성은 있는 것 같음. 그래서 도서정가제를 종이책과 전자책을 구별해서 차별적으로, 법도 따로 만들어서 다르게 적용하는 방안은 어떤지?

○ (A단체) 창작 콘텐츠는 같다고 보며, 시대가 바뀌어서 매체가 바뀐 것이지 책 문화 생태계에서 별개라고 생각하지 않음. 다만 유통되고 있는 장르가 달라서 구분할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저희는 하나의 뿌리에서 나왔다고 생각하고 전혀 별개라고 생각지 않음. 그리고 유통 측면을 고려해서 가격 책정이 다른 것으로 알고 있음

○ (○○○ 위원) 재고가 많을 때 재정가를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유통이나 판매처의 강요에 의해 재정가를 하는 경우도 있는지?

○ (A단체) 그렇지는 않음. 그리고 재정가를 통해 가격을 낮추는 확률은 많지 않음.

○ (○○○ 위원) 전자출판물의 동일한 콘텐츠가 오프라인으로도 판매가 되는데, 상호간에 경쟁 관계가 있는 것인지?

○ (A단체) 그렇지 않음. 다른 형태, 다른 것임

○ (B단체) 저희가 희망하는 것은, 현행 도서정가제에 안에 웹소설과 웹툰에 대한 충분한 고민을 한 이후에 그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만들어 달라는 것이지, 도서정가제에서 제외해 달라는 것은 아님.

○ (C단체) 저희가 도서정가제에 대해 논의했을 때 전자책이나 웹툰 분야는 좀 더 연구해야 된다고 주장했고, 또 도서전 등을 통해 할인을 하여 소비자들이 책과 가까워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했음.

○ (○○○ 위원) C단체에 대해 질의하겠음. 공공 도서관에 대한 할인폭을 축소하는 안은 간접적으로 소비자한테 피해가 가는 것으로 보이는데, 소비자 관점에서는 문제없다고 보시는지?

○ (C단체) 공공 도서관의 경제상 이익 제공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있었음. 도서관 측에서 물품을 달라거나 하는 문제가 있어서, 그로 인해 도서 유통·출판업계의 생태계가 좋지 않은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어 불필요하다고 생각함

○ (○○○ 위원) 전자출판물의 특성을 고려하여 별도 적용 방안과 마케팅 기법을 고려한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에 대해 전자출판물의 마케팅 기법은 어떠한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하는지?

○ (B단체) 전자책은 종이책과 달리 공급률이 있는 게 아니고 판매에서 수익이 나면 그 수익을 배분하는 비율로 이루어짐. 보통 플랫폼 사업자가 30~ 40% 수입을 가져가고 출판사가 60~70%를 가져가

면 그것을 가지고 작가와 배분하는데, 결국은 책이 팔릴 때마다 작가가 가장 큰 수익을 갖고 그 다음에 플랫폼, 출판사 이런 식으로 수익 배분 구조가 이루어지다 보니, 할인율을 올리게 되면 결국은 작가의 수익만 더 많이 줄어드는 일이 발생하게 됨. 그래서 저희가 원하는 것은 전자책 같은 경우에는 경제상 이익의 할인율을 늘리는 한편, 이를 최종 판매자가 출판사에게 부담하게 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요청드림.

○ (○○○ 위원) 플랫폼에서 할인이 들어가면 본인이 가져가는 수익도 줄어들게 되어서 웹툰이나 웹소설은 플랫폼, 출판사, 작가가 전체적으로 보면 같이 가는 구조인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지?

○ (B단체) 좋은 매출을 올리는 플랫폼들은 출판사, 작가하고 공동체적인 성격으로 많이 움직이려 하고 있고 투자도 함. 만약 할인율이 그냥 무작정 오픈되면, 매출이 많이 나오고 고객이 많이 형성된 시장은 할인율에 목매지 않고 다양한 방법으로 수익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할인을 해서 자기네들의 수익을 줄일 이유가 없는 반면, 후발 주자는 할인 말고는 사실상 할 것이 별로 없음. 한쪽이 할인하다 보면 전반적으로 다 할인할 수 밖에 없는 효과가 나타남.

2) 부처 의견 청취

○ (문체부) 2014년도 법 개정 이후에 추진해 온 도서정가제에 대해서 연구를 해 봤는데, 일정 부분 성과가 있다는 것을 확인함. 그동안 지속적으로 감소해 오던 지역 서점 수의 감소세가 완화가 됐고 특히 단행본을 판매하는 독립서점 숫자는 오히려 몇 백개 증가를 해 오고 있음. 그리고 그 동안 구간 중심시장이 신간 중심시장으로 재편되고, 도서 정가의 상승률이 둔화가 됐으며 일반 물가 상승률과 비교해서도

낮은 수준이었음. 그래서 저희들이 도서정가제가 출판 산업의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과 소비자들의 요구를 고루 판단해서 큰 틀에서는 현행 유지하고, 다만 생태계와 소비자의 후생 등을 고려해서 세부 조정안을 마련했음. 먼저 재정가 기간을 18개월에서 12개월로 완화했고 재정가 제도를 내실있게 운영하기 위해서 출판·유통 통합 전산망 사업과 연계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출판계와 협의해서 재정가 페스티벌 같은 것을 통해 소비자 후생을 넓혀 나가기로 함. 전자출판업계의 요구를 반영해서 정가 표시 의무에 대한 법 해석을 완화하여 원화 단위로 표시하지 않고 전자화폐 단위로 표시하고 원화와의 교환비율을 병기하면 의무를 준수한 것으로 했고, 웹툰·웹소설 등 전자 출판물에 대해서는 특성이 일반 종이책과는 다르기 때문에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업계 의견을 수렴하면서 장기적으로 별도 적용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음. 국가·지자체·공공 기관의 공공도서관에 지역 서점이 납품할 때 경제상 이익 제공 5%를 제외하고 가격 할인 10%만 제공하는 것으로 함. 소비자에게 판매된 적이 없는 사실상 새책을 중고 시장에 유통하는 행위를 금지해서 유통 질서를 바로 잡기로 했음. 아울러 도서정가제 위반에 대한 처벌과 관련해서 반복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중과할 수 있도록 했음. 위 사항에 대해 법률이나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추진해 나갈 예정임

○ (○○○ 위원) 도서정가제의 도입 취지 중 하나가 저작자의 창작 의욕 고취인데, 개선안을 고려하실 때 저작자에 대한 조사를 했는지?

○ (문체부) 도서정가제 개선 관련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했는데, 그 구성원 중에 작가협회가 들어가 있어 작가들의 의견도 논의에 충분히 반영했음.

○ (○○○ 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일몰 규제 개선 방안을 보니까 재정가

부분은 도서정가제를 완화하는 반면, 공공 도서관에 대한 할인 폭은 축소함으로써 도서정가제를 강화하는 모습을 보임. 도서관에 대한 할인폭이 줄어들면 도서관의 도서 구입양이 줄어들 것이고 결국 도서를 원하는 소비자의 후생이 줄어드는 것 아닌지? 공공도서관에 대한 할인을 축소하는 이유가 정확하게 무엇인지?

○ (문체부) 도서관의 경제상 이익 제공과 관련해서 그동안 민원이 많았음. 경제상 이익 5%를 가지고 공공도서관이나 지역 도서관에서 일부 무리한 요구를 한 사례들도 많았음. 또한 도서관에서도 관리의 어려움이 있었음. 지역 서점이 지역 내에서 책 문화 생태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려는 것임

○ (○○○ 위원) 제시해 주신 규제 개선 기본 방향을 보면, 전자 출판물 관련해서는 웹소설·웹툰 등의 신산업 특성과 업계의 요구를 반영해서 법체계 정비를 통해 별도로 적용을 추진하겠다고 하는데, 별도라는 의미가 법을 분리하시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같은 제도 안에서 세부적인 사항을 개선하겠다는 것인지? 그리고 법체계 정비 시점이나 향후 일정은 어떻게 되는지?

○ (문체부) 전자출판 내에서도 이해관계가 다르고, 같은 웹툰·웹소설 협회 간에도 의견이 달라 힘든 상황. 그러나 특성이 다른 건 분명함. 시간을 가지고 좀더 구체적인 연구를 통해서 개선하자는 것이 출판계의 의견임. 그래서 먼저 가장 콘텐츠성이 높은 웹툰에 대해서 진행할 예정. 만화진흥법에서 웹툰의 정의를 개정하고 출판진흥법에서는 도서정가제에서 제외하는 방향으로 진행할 예정. 웹소설은 조금 더 성격이 달라서 연구가 더 필요. 당장은 아니고 1년~2년 이상 시간이 걸릴 문제라고 생각됨.

○ (○○○ 위원) 재정가 기간을 18개월에서 12개월로 단축하고 페스

티발 위주로 한다는 것이 정가를 내렸다가 다시 올리는, 예전의 할인 방식이랑 비슷한 구조로 가는 건지? 전자 화폐와 원화 단위의 비율 문제 등으로 사실상 도서정가제에서 탈피해서 웹툰·웹소설 작가들이 피해를 볼 우려는 없는 건지?

○ (문체부) 재정가와 할인이 다른 것은 작가에게 주는 인세 부분인데, 재정가를 하게 되면 재정가 금액의 일정비율을 인세로 주는반면, 할인을 하게 되면 서로 간의 신뢰 문제가 발생함. 그래서 소비자에게 할인의 효과를 주기 위해서 재정가를 실시한 책들을 모아서 도서전에 이벤트로 할 수도 있고, 별도의 재정가만 모아서 페스티발을 할 수도 있는 방식으로 하려는 것임. 전자화폐와 관련해서는, 원화의 교환가치가 달라지는 것 때문에 굉장히 우려를 많이 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웹툰 업계에서 가상화폐로 정가 표시를 인정해준다면 교란이 일어나지 않토록 스스로 정비하겠다고 함.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마련된 것이며, 그 우려되는 부분은 운영하면서 다시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음.

○ (○○○ 위원) 만화진흥법에 보면 디지털 만화가 있는데, 디지털 만화와 웹툰이 다른 건지?

○ (문체부) 디지털만화는 기존 종이책, 종이만화를 PDF 등으로 변환해서 USB 등의 저장매체에 저장해서 보는 것을 포함하고 있어, 전자통신망을 이용해서 보는 웹툰 서비스와는 좀 다른 형태로 보이기 때문에 법적 정비가 필요한 상황임

3) 위원회 논의

○ (○○○ 위원) 급변하는 전자출판물 시장을 고려할 때, 전자출판물의 별도 적용방안을 신속히 마련하도록 부대권고할 필요

○ (○○○ 위원) 공공도서관 할인율 제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소비자 후생측면에서 추가적으로 검토할 필요

○ (○○○ 위원) 공공도서관 할인율 제한하는 부분만 놓고 보면 추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나, 도서정가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이해관계자 간 협의하는 과정에서 나온 결론으로 보임

○ (○○○ 위원) 공공도서관 할인율 제한하는 부분은 규제 강화에 해당하여 현재 심의를 통해 추후 개정안 상정시에는 심의를 생략

○ (○○○ 위원) 웹툰·웹소설은 지금 해외에서 많이 활성화되고 있기 때문에, 생태계 내부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할 필요

○ (○○○ 위원) 전자출판물 별도 적용방안과 관련하여, 이해 당사자가 많고 굉장히 의견이 달라서 충분한 의견 수렴이 필요. 하지만 시장이 급격히 변하기 때문에 장기적인 검토로 이어지는 것은 적절치 않음

□ 심의 결과

○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으로 의결

○ 다만, 향후 전자출판물(특히 웹소설,웹툰)에 대한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소비자 후생 측면에서 보완해야 할 추가 방안을 검토할 것을 부대권고